

『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
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재상 의원 외 9명

2. 제안이유

-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일부개정 법률이 2012. 1. 17일자로 공포, 시행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 내용

-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(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)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
 -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,
 - 중소유통업과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의무휴업일을 매월 2일, 두 번째·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함.
 - 다만, 연간 총매출액 중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」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적용대상에서 제외함.

4. 관련근거

- 관계법령 :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,
- 대규모점포 중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 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, 영업시간을 오전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, 의무휴업일을 매월 2일, 두 번째·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였으며,
- 한편으로는, 연간 총매출액 중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」 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적용대상에서 제외함.
- 다만, “대규모점포 중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 으로 정하는 것”은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 이 아직 개정 시행되지 않은 상태로써, 이번 개정조례안이 공포되어도 바로 시행할 수 없으므로,
- 우선, 준대규모 점포만이라도 시행하기 위하여, 부칙 제1조에 시행일을 ‘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’로 하고, 대규모 점포는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 공포 후에 시행하기 위하여, 부칙 제2조에 ‘제14조의2에 따른 “대규모점포 중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 으로 정하는 것”은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 중 해당 규정이 개정 시행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.’로 명시하였음.

-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들의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대형유통업체와 소상공인 간의 상생발전은 물론, 지역 경제의 건전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리라 생각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됨.